



이창 중웨이 세척기 유한공사 VS 이창 잉한 초음파 전기 유한공사 상업비밀침해 분쟁 사건

3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9)鄂民三终字第36号
판결 일자	2009년 9월 30일	판결 결과	상소 기각(권리자 승)
원심원고(피상소인)	이창 잉한 초음파 전기 유한공사		
원심피고(상소인)	1. 이창 중웨이 세척기 유한공사, 2. 리우원쑹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153조, 최고인민법원의 부정당경쟁 민사사건 법률 응용의 문제에 관한 약간의 해석,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영업비밀	고객명단		
키워드 (Keyword)	고객명단(客户名单), 기술정보(技术信息), 비밀보호계약(保密合同), 절차의 합법성(审理程序的合法性)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이창 잉한 초음파 전기 유한공사(이하 “잉한공사”)는 초음파세척기설비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공사로, 원심 피고 리우원쑹은 잉한공사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심 피고 리우원쑹은 잉한공사와 업무에 대한 비밀보호계약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리우원쑹은 잉한 공사에서 일하면서, 부친과 원심 피고 이창 중웨이 세척기 유한공사(이하 ‘중웨이공사’)를 설립하였다.

잉한공사의 거래처인 지난중기공사는 세척기 입찰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잉한공사는 관련 업무담당자이던 리우원쑹의 이메일로 입찰서를 전달하였다. 리우원쑹은 입찰서를 받아서, 잉한공사가 아닌 자신의 중웨이공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잉한공사는 중웨이공사와 지난중기공사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안 직후, 원심 피고들을 상대로 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이 잉한 공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웨이공사와 리우원쑹이 상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피상소인)



원심 피고(상소인)

고객명단은 상업비밀에 속하고, 리우원쑹은 경영정보를 누설하였다.

리우원쑹은 원심 원고와 체결한 비밀보호계약을 위반하였다.

1심 심리절차가 합법적이지 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명단은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로 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

비밀보호계약은 무효다.

원심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이 합리적이지 않다.

04 판결 요지

1심 법원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상소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잉한공사가 주장하는 고객명단은 상업비밀 중 경영정보에 속한다. 잉한공사는 지난중기공사와 2004년, 2005년, 2008년에 수차례 업무적 거래가 있었으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한 특정 고객에 해당한다.

잉한공사와 리우원쑹의 노동계약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리우원쑹에게 월급, 사회보험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각종 비용도 정산되었으므로, 양자는 사실상의 노동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 리우원쑹이 잉한공사의 업무를 통해서 고객정보를 파악하였고, 부정한 수단으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고, 중웨이공사와 리우원쑹의 공동불법행위도 성립한다.

잉한공사가 리우원쑹에게 ‘비밀보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리우원쑹의 비밀보호 의무 부담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 1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배상액은 합리적이다.

05 Key Point

최근 중국 상업비밀 관련 판례에서 ‘고객명단’ 혹은 ‘고객정보’가 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주 다투어지고 있다.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 제13조에서, 『상업비밀 중의 고객명단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거래관습, 의향,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관련 공지정보와 구별되는 특수 고객정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다수 공중 고객의 명부 및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고객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잉한공사와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지난중기공사 관련 정보를 ‘특정고객 정보’로 보아 상업비밀성을 인정하였다.

중국의 ‘경업제한’ 사건에 있어서는, 판례가 경업제한을 요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비밀보호비’ 지급이 요구됨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비밀’ 사건에 있어서, 본 판결은 ‘비밀보호비’ 지급이 직원의 비밀보호의무 부담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